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11.22.~11.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본칙 중 “별표 1부터 별표 15”를 “별표 1부터 별표 4”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)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에 따른다.

[별표 1]

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| 관세율포 번 호 | | 품명 | 규격 등 | 세율 (%) | 한계수량 |
|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호 | 소호 | | | | |
| 0207 | | 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 과 식용 설육(脣肉)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 | | | |
| 0207 | 1 |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 | | | |
| 0207 | 12 | 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) | | 0 | |
| 0207 | 14 | 절단육과 설육(脣肉)(냉동한 것 으로 한정한다) | | | 30,000톤 |
| | | 1. 절단육 2. 설육(脣肉) 나. 기타 | | 0 0 | |
| 1602 | |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脣肉)·피·곤충 | | | |
| 1602 | 3 | 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 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 | | | |
| 1602 | 32 |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의 것으로 한정한다] 으로 만든 것 | 삼계탕 이외의 것 | 0 | |